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은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 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① 이 예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3. “퇴직연금사업자”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퇴 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법령 제 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4. “디폴트옵션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사전 지정운용제도”로써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조 취급대상

이 예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지시에 따라 퇴직 연금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예금의 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1. 고정금리형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 시까지 적용

2. 변동금리형

예금가입일에 선택한 회전기간(3개월, 1년)에 따라 매 회전기간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

3. 디폴트옵선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행되는 디폴트옵선허제의 정기예금으로 예금가입일 및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만기 시까지 적용

제4조 계약기간

① 고정금리형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또는 31일 이상 5년 이내에서 일수 지정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변동금리형 예금의 계약기간 및 회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및 회전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회전기간
1년	3개월
3년	1년
5년	1년

③ 디폴트옵선허 예금의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 이내에서 연, 월, 일 단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가입금액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

제6조 만기처리방법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1.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 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

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예치 신청 시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상품운용신청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 특약 -

퇴직연금정기예금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동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2.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제6조의 2 재예치 기준일

이 예금의 만기일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제7조 이율의 적용

① 고정금리형 및 디폴트옵션형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고정금리형 및 디폴트옵션형 예금에 대해 만기일 전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변동금리형 예금의 이율은 예금가입일(재예치일) 또는 매 회전기간이 경과하는 달의 응당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율을 변동하여 적용합니다.

④ 변동금리형 예금의 최초 회전기간 경과 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

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⑤ 변동금리형 예금의 최초 회전기간 경과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예금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매 회전기간 단위로 위 제③항의 이율을 적용하되, 최종이율 결정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회전기간 미만일수에 대하여는 최종이율결정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 분할해지

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가입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제9조 특별중도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면서, 가입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예금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경과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4.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6.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8.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10.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11.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 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제10조 제한사항

이 예금은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통장의 발급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거래방법

이 예금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여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부 칙<2006. 12. 26>

이 약관은 200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며, 특별중도해지는 기 가입된 계좌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재예치는 시행일 이후 도래되는 재예치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6. 5>

이 약관은 200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8>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26>

이 약관 제4조 1항에서 추가된 계약기간은 2011년 4월 26일 이후 신규 가입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7. 2>

제5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27.>

이 약관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자동재예치 됩니다.

※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